

기후변화 대응 캐나다의 최근 입법 동향 -기후변화책임법안을 중심으로-

I. 캐나다와 기후변화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2년 이후의 소위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체제의 변화 및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신설 및 개정 등 국내법제도 정비 등이 그것이다.

서방선진국 모임, G-7의 일원인 캐나다 역시 기후변화 관련 여러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부터 교토의정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관련 협약에 참여하여 왔다.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

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서도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자국의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개도국들의 기후 변화적응을 위한 3.84억 달러의 지원을 2010년 5월 발표하였다.¹⁾

캐나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9년 당시 지구 전체 배출량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의 뒤를 이어 전체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²⁾ 그러나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호주, 미국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국가이다. 캐나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캐나다의 산업구조에 기인한다.³⁾ 석유, 석탄 및 풍부한 산림자원 등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캐



1)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35/foreign-aid-development-assistance>> <<http://aidcanada.ca/blog/>> 참조

2) Key World Energy Statistics, IAEA, 2009.

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Canada, 2010 .

나다는 이를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구조 역시 상당 부분 석유 및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는 매년 국민 일인당 8,300kg의 원유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도 높은 전 세계 1위에 해당한다.⁴⁾

이러한 국가적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구조로 인해 캐나다는 온실가스저감이라는 국제적 어젠다와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국제적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도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을 주장하며 자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의 보수당 정부는 미국의 기후변화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구체적인 국내법의 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이유로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포스트 교토 체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곧 임박할 새로운 국내외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국내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 주요 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시장기반적 배출권거래제도(market-based emission trading system)라는 차원에서 2009년 5월 친환경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연구를 위한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청정에너지기금 (Clean Energy Fund)을 설립하였다. 또한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주 등 3개 주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 및 뉴멕시코 주와 함께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포함하는 배출총량규제-거래제를 실시하도록 합의하였다. 2012년부터 발전소 등 대형 배출시설에 탄소 거래가 시행되고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에 해당하는 수송 분야가 거래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동 기고문에서는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법제도의 현황을 기후변화책임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Id; 캐나다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5%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추운 날씨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추운 날씨와 방대한 국토를 보유한 캐나다에서의 이동수단은 95% 이상이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점도 그 원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24%는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연료 소비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4%는 캐나다의 주요 산업인 목축 및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며 기타 에너지 및 전력 생산 등에서 발생한다.

II. 기존의 입법 노력

캐나다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것은 1992년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실질적으로 각국의 구체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인 2005년 5월 이후이기 때문에 캐나다 역시 2005년 이후를 전후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국제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체제, 소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일원론과 이원론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⁵⁾ 따라서 캐나다가 체결한 국제협약의 경우 행정협약을 제외하고는 그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국내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캐나다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한 국내 법률은 2006년 상정되고 2007년 6월 22일 상하원을 통과한 ‘교토의정서이행법률’(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이다.⁶⁾

교토의정서상 캐나다의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토의정서상 캐나다가 공약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체적인 수단들을 통해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계획(Climat Change Plan) 작성과 둘째, 이에 대한 수행 보고서의 제출이다. 동법은 환경부장관에게 법률 발효 후 60일 이내 그리고 2013년까지 매년 5월 31일 이전에 기후변화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교토의정서 제3조 1항상 캐나다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다음과 같다.⁷⁾

- 2012년까지의 감축될 온실가스의 양
 -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
 - 온실가스 배출량거래제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인 장려 제도 등의 조치
 -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체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 준주 및 기타 인디언 영토와의 협력 및 협약 체결 등
 - 그리고 상기의 각 조치들이 시행되는 일자
- 그리고 동법은 환경부 장관에게 상기의 기후



5)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헌법 제6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국내의 입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국제법이 국내법에 바로 수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6) S.C. 2007, c. 30 / L.C. 2007, ch. 30.

7) 동법 제5조.

변화계획 작성과는 별도로 동법 발효 후 120일 이내에 상기의 계획의 수행여부 및 보다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⁸⁾ 동법은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은 2006년 자유당 정부가 선거에서 실패한 이후 2008년 보수당 정부가 재집권하는 정치적인 흐름 속에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동 법률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2007년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및 에코 저스티스(Eco-justice)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 20일 캐나다 법원은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 2009년 12월 15일 캐나다 대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⁹⁾

이외에도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제정되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보류되고 있는 법률로는 캐나다 배출저감장려청법(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이

있다.¹⁰⁾ 동 법률은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의 제정이전인 2005년 6월 29일 제정되어 동년 10월 3일 발효된 법률이다.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이 교토의정서상의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동적인 법률임에 반해 동법은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국내외에 이행하여 온실가스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소위 기후변화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¹¹⁾

캐나다 배출저감장려청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¹²⁾ 동법에 의해 신설되는 배출저감장려청(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은 캐나다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국내외에서 온실가스 저감 및 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단위인 소위 크레딧(credits)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배출저감장려청은 시장경쟁적인 구매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창출된 크레딧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캐나다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을 통해 창출된 크레딧을 취득할 수 있다.¹³⁾ 그러나 동법은 해당 기관에게 크레딧의 구매는



8) 동법 제9조.

9) 2008 FC 1183.

10) S.C. 2005, c. 30, s. 87.

11) 동법 전문에 따르면 동법의 제정의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환경보호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신장이라는 부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2) 동법 제4조.

13) 구매하는 방식은 반드시 경쟁적인 방식을 통해 구매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 17조 및 18조.

허용하였지만 판매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거래자와 달리 크레딧을 사고팔 수 없어 중간거래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이는 교토 의정서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감축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거래자가 아닌 캐나다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크레딧을 구매하여 감축공약을 간접적으로 공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법에 의해 설립되는 배출저감장려청의 장, 배출저감장려청장은 5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배출저감장려청의 대표(president)로서 지휘 감독권이 있다. 장려청에는 3년 임기의 1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있어 최소한 1년에 4번 개최되어야 한다.¹⁴⁾ 자문위원회는 배출권거래시장의 동향 등을 포함하여 배출권 구매에 대한 전반적 자문을 장에게 하며 해당 자문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연구원들을 둘 수 있다.¹⁵⁾ 배출저감장려청은 캐나다의 개인 기관 및 정부 국제기구 외국정부와 캐나다를 대표하여 장려관의 명의로 계약 및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그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안 관련 법

적 소송을 국내 및 외국에서도 본인의 명의로 수행 할 수 있다.¹⁶⁾ 그리고 배출저감장려청이 수행한 모든 구매 내역 및 거래 현황은 정부절차법에 따라 자료화되어 보관되어야 한다.¹⁷⁾

배출저감장려청장은 매 5년마다 다음의 내용을 담은 5개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⁸⁾

- 5년 동안의 사업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 재정 및 인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전략
- 해당 기간 내에 예상되는 목표 달성치

또한 매년 12월 31일 전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1년 동안의 재정보고서 및 경영수행성과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담은 경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⁹⁾ 그리고 동법 제24조에 따라 배출저감장려청은 매년의 운영에 대해 정부 관련법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감사의 내용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된다.²⁰⁾

배출저감장려관법은 교토의정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담당하는



- 14) 동법 제12조.
- 15) 동법 제12조.
- 16) 동법 제20조 및 21조.
- 17) 동법 제20조.
- 18) 동법 제25조.
- 19) 동법 제26조.
- 20) 동법 제24조.

주무부서로 설립되었으나 교토의정서 체제의 국제적 불확실성 및 보수당 정부의 등장으로 잠시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법은 의회의 예산 투입에 따라 언제라도 해당 기관을 설립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I. 기후변화책임법안

1. 제정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는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있어서 국내의 산업구조 및 2006년 및 2008년 보수당 정부의 집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제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2007년 교토의정서 이행법률의 미집행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자유당 및 신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책임법(Climate Change Accountability Act)은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후속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²¹⁾

2010년 5월 5일 찬성 149표 대 반대 136표로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책임법안은 지난 2008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당시 연방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통과되지 못하고 2009년 재상정되었다.²²⁾ 2009년 재상정된 법안은 기존의 여당인 보수당이 제안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보다 상향된 수준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고,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할 의무를 공약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은 미국의 기후변화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연기하고 있다.

동 법률안이 상원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위원회를 거쳐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하여야 하지만 지난 2008년과는 달리 이번의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David Suzuki 재단의 Dale Marshall 기후 변화 정책 분석가에 따르면 보수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만일 비 보수당 상원 의원들이 동 법안을 지지하는 경우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는 올해 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³⁾ 만일 예상대로 동 법안이 올해 내에 통과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시장기반 시스템 등의 마



21) Bill C-311, 3rd Sess., 40th Parl., 59 Elizabeth II, 2010.

22) <<http://www.sierraclub.ca/en/climate-change/action-alert/pass-climate-change-accountability-act-bill-c-311>> 참조.

23) Id.

련 등 구체적인 교토의정서 이행의무 이행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교토의정서이행법률 미집행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 역시 동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으나 현 보수당 정부의 동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교토의정서이행법률과 같이 집행이 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상관없이 현 법안은 지난 교토의정서이행법률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비교법적인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의 이행이 경제 개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및 환경 관련 부서의 소위 원탁회의 등은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 내용

동 법안은 전문 및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안은 전문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산업화 시대 초기에 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였다는 등의 국제적인 과학적 인식에 공감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방지에

대한 캐나다의 책임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2도 범위 내의 기온 상승 정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가 요망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캐나다 역시 모든 산업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토의정서의 이행법률로서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 이는 목적 조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은 캐나다가 기후체제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 위해를 예방하여 대기 내의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²⁴⁾

동 법안은 개념 조항에서는 온실가스, 캐나다 온실가스, 목표계획 및 동 법률에서 언급되는 행정기구들에 대한 개념을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개념들에 준하여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실가스배출이라 함은 일년을 단위로 199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의 독성물질 목록에 규정된 물질 중 이산화탄소(CO²), 메탄(CH⁴), 이산화질소(N²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⁶) 등 6개 물질의 전체 배출로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경에서의 배출을 제외한 것이다.²⁵⁾

동 법안에서 특이한 것은 기존의 교토의정서



24) 동 법안 제3조.

25) 동 법안 제2조.

이행법률과는 달리 조항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캐나다의 온실가스배출 저감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법안에 따르면 장기적인 목표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0% 수준이며, 2020년까지는 1990년 수준의 25%이다.²⁶⁾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협상, 특히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관련 국제회의에서 동 법안에서 규정한 감축의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캐나다의 모든 정책이 상기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공약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이나 다른 법률에서의 관련 규제의 제·개정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⁷⁾ 따라서 이러한 목표 공약은 단순히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약속하는 공약을 넘어 동 법안에 따라 작성되고 수행되는 여러 계획 및 조치들이 달성하여야 할 기본적인 목표치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동 법안은 교토의 정서이행법률이 채택하고 있던 법률구조 중 기후변화 관련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구조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동법이 통과된 후 6개월 이내에 5년을 주기로 하여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및 2045년의 총 7차례의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²⁸⁾ 해당 계획 안에는 5개년 계획마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해당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이용된 구체적인 과학적, 경제적, 기술적 자료와 분석 방법들을 포함하여야 한다.²⁹⁾ 예컨대 유엔 산하의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최근 보고서 및 타국에서 채택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안 등이 역시 고려 대상이다. 물론 해당 계획에서 제시하는 감축목표는 캐나다가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부합되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늦어도 2015년부터는 매 5년마다 감축목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표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된 목표계획 역시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³⁰⁾

동 법안에 따르면 2015년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책 등이 2010년 연말까지 준비 시행되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은 상기의 감축 목



26) 동 법안 제5조.

27) Id.

28) 동 법안 제6조.

29) Id.

30) Id.

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배출제한 및 배출 기준 설정
-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기반적 제도
- 관련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 및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적 지원책 마련
- 주 및 준주 등과의 협력 및 협약 체결

동법은 연방 이외의 주, 준주 및 인디언 원주민 부족 등의 정치적 실체가 동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³¹⁾

동 법안은 제7조에서 제5조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취할 각종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방출량의 일반적 제한 권한
- 온실가스배출제한을 규정하는 기준 설정 권한
-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여하한의 장비, 기술, 연료, 자동차 및 처리 절차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대한 규제 권한
- 온실가스 방출의 허용 및 승인 권한

- 온실가스배출 저감, 제거, 허가, 크레딧(credits) 등 단위 부과 및 거래 허가 권한
- 법집행 관련 조사, 감시, 보고, 벌금 및 기타 동법하에서의 규제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권한
- 범위반시 벌금 및 지역 등의 처벌 할 수 있는 권한
- 기타 동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³²⁾

동법 제12조에서 법집행을 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의 위반시 벌칙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법 위반의 경우 벌금을 두 배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³⁾ 또한 하루 이상 계속적인 법 위반 상태에 대해서는 위반일별로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범위반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법으로 정한 벌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법원은 초과된 경제적 이익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적인 벌금을 명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³⁴⁾ 개인이 아닌 법인의 법 위반의 경우, 법인 자체의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범위반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경



31) 동 법안 제11조.

32) 동 제7조상 언급된 규제권한은 교토의정서이행법률과 유사하지만 보다 확대되어 처벌규정의 경우 보다 강화되고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33) 제12조 1항

34) 제12조 4항

우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³⁵⁾ 또한 기소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위반행위자인 고용인이나 직원 등이 기소되지 않아도 지휘 계통에 있었던 자 또는 법인 자체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³⁶⁾

동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상기의 계획 수립 후 매년 관련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³⁷⁾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무부서인 환경부장관의 계획 수립 및 계획 이행에 대한 보고서 작성 후 의회 보고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에 환경과 경제 국가원탁회의법에서 설립하는 환경과 경제 국가원탁회의가 해당 계획수립 및 보고서 작성 후 소집되어 이를 검토한 후 권고 내용을 제시하고 환경부는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⁸⁾

우선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계획을 작성 및 수정한 경우 180일 이내에 환경과 경제 원탁회의가 소집되어 해당 계획들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³⁹⁾

- 계획 또는 수정된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 속에서의 정보수집, 연구, 분석

- 원탁회의의 활동 범위 내에서 목표계획 또는 수정된 목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과학적, 경제적, 기술적 근거 및 분석방법 등의 질적 수준과 완성도에 관한 권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권고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상원과 하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하원 각 의장은 제출 받은 이후 첫 회기 3일 이내에 이를 의제로 제시하여야 한다.⁴⁰⁾ 또한 환경부 장관은 권고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 내용을 관보에 해당 권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고시되었으며 해당 권고 내용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알려야 한다.

또한 환경부에서 보고서를 발간 후 120일 이내에 환경과 경제 국가원탁회의가 소집되어 해당 보고서 관련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⁴¹⁾

-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보고서의 분석, 정보수집 및 연구수행
- 원탁회의법 제4조상 원탁회의의 주제하에 있는 내용 중 제안된 개별적 조치들이 보고



35) 제12조 5항

36) 제12조 6항

37) 제10조

38) 제13조.

39) 제13조 2, 1항

40) 제13조 2. 2항

41) 제13조 1항

서에서 추구하는 온실가스감축을 달성할 개연성 및 제안된 조치들이 제5조 및 6조에서 공약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 개연성을 포함한 여하한의 권고

환경부 장관은 원탁회의로부터 권고가 접수된 후 3일 내에 해당 권고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며 상원과 하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하원 각 의장은 제출 받은 이후 첫 회기 3일 이내에 이를 의제로 제시하여야 한다.⁴²⁾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계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고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 내용을 관보에 해당 권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고시되었으며 해당 권고 내용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알려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감사법(General Audits Act) 제15조 1항에 근거하여 수립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ers)는 동법 발효 후 2년에 한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조 2항의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진전사항의 분석

-10조 2항의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진전사항의 분석

-캐나다의 온실가스감축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전사항의 분석

-위원회가 관련하여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및 권고⁴³⁾

위원회는 상기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발간하고 해당 보고서를 발간 전 또는 발간일에 상하원 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하원 각 의장은 제출 받은 이후 첫 회기 3일 이내에 이를 의제로 제시하여야 한다.⁴⁴⁾

소 병 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2) 제13조 2항

43) 제13조 1. 2항

44) 제13조 1, 3항